

[별지 제7호서식의(가)] 삭제 <2005.8.4>

[별지 제7호서식의(나)] (규칙 제14조제4항 관련) <개정 2015.8.13.>

확정된 (선거인명부)·(거소투표신고인명부)·(선상투표신고인명부)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

투 표 구 명	등 재 번 호	성 명	오 기 사 항 등	비 고

- 주 : 1. “오기사항등”란에는 오기·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(예 : 성명중 “○○”은 “××”의 오기임, ○년 ○월 ○일 ○○법 위반으로 ○○형을 받음, ○년 ○월 ○일 사망함등).
2.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“주민등록 재외국민” 또는 “외국인”이라 적는다.